|  |  |  |
| --- | --- | --- |
|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 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회발[2015]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선전(深圳)·칭다오(靑島)· 샤먼(夏門)·닝보(寧波)시 분국: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의 경영 및 자금 운용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일부 지역에서 앞서 추진한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범위에서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 관리방식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자유환전을 시행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환전이라 함은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계좌 내의 외환관리국의 현금출자권익 확인을 거친(또는 은행의 현금출자 입금 등기를 거친) 외화자본금을 기업의 실제 경영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환전 비율은 잠정적으로 100%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적시에 상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화자본금의 자유환전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상투자기업은 지급환전 제도에 따라 외화자본 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환전 원칙에 따라 기업의 환전업무를 처리할 때 마다 기업의 직전회 환전(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포함)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준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기존외화상태 의 경내 이체와 국경간 대외지급은 현행 외화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유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환전지급대기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외상투지기업은 원칙적으로 은행에 상응하는 자본항목-환전지급대기계좌(이하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약칭)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 자유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이 계좌를 통해 각종 지급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동일 은행 지점에 개설한 동명의 자본금계좌, 경내 자산 현금화계좌 및 경내 재투자계좌는 모두 동일 환전지급대기계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지급환전 원칙에 따라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환전지급대기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없다.  외상투자기업 자본금계좌의 수입 범위: 외국투자자가 경외에서 송금하는 외화자본금 또는 출자납입금(비주민 예금계좌, 해외계좌, 외국인의 경내 외화계좌 출자 포함), 경외입금 보증금 전문계좌로부터 입금되는 외화자본금 또는 출자납입금; 본 계좌에서 적법하게 이체되었다가 다시 입금되는 자금, 동명의 자본금계좌로부터 입금되는 자금, 거래의 취소에 따라 반납되는 자금, 이자수익 및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기타 수입.  자본금계좌의 지출 범위: 경영범위 내의 환전, 환전 후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이체, 경내에서 기존통화상태로 경내입금 보증금 전문계좌·동명자본금계좌·위탁대출계좌·자금집중관리 전문계좌·해외대출 전문계좌·경내 재투자 전문계좌로 이체되는 자금, 외국투자자의 자본감소·투자철회에 따른 송금, 경상항목의 대외지급 및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기타 자본항목 지출.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수입 범위: 동명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의 자본금계좌·경내 자산 현금화계좌·경내 재투자계좌에서 환전 후 입금되는 자금, 동명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의 환전지급대기계좌로부터 입금되는 자금, 본 계좌에서 적법하게 이체되었다가 다시 입금되는 자금, 거래의 취소에 따라 반납되는 자금, 위안화 이자수익 및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기타 수입.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지출 범위: 경영범위 내의 지출, 경내 지분투자자금 및 위안화 보증금 지급, 자금집중관리 전문계좌 및 동명 환전지급대기계좌로의 이체, 사용이 완료된 위안화 대출금 상환, 외화 구매·지급 또는 대외 외화대출금의 직접 상환, 외국투자자의 자본감소·투자철회 자금의 외화 구매·지급 또는 대외 외화대출금 직접 상환, 외화 구매·지급 또는 대외 외화대출금의 직접 상환을 위한 경상항목 지출 및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기타 자본항목 지출.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 자금으로 외화를 매입하여 자본금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환전지급대기계좌로부터 송금한 담보 또는 기타 보증금의 지급에 사용된 위안화 자금은 담보 이행이나 위약금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 경로에 따라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사용은 기업의 경영범위 내에서 진실 및 자용(自用) 원칙 준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과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1) 기업의 경영범위를 벗어나거나 국가의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지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2) 법률·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3) 위안화 위탁대출(경영범위로 허가받은 경우는 제외), 기업간 대출의 상환(제3자 대지급 포함) 및 제3자에게 재대출된 은행 위안화 대출의 상환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4)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제외하고 자체 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매 관련 지출에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4. 환전 자금을 이용한 외상투자기업의 경내 지분투자를 편리화한다.**  기존통화상태로 지분투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외상 투자기업(외상투자성회사, 외상투자창업투자기 업 및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이 그의 경내 투자 프로젝트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환자본금을 환전하거나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기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 기업 이외의 일반 외상투기업이 기존통 화상태의 자본금으로 경내에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현행 경내 재투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전한 자금을 경내 지분투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먼저 등록지 외환관리국 (은행)에서 경내 재투자 등기를 행하고 상응하는 환전지급대기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기업이 개설한 환전지급 대기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투자대상기업이 경내 에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상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 환전 자금의 지급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한다.**  (1)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 및 기타 관련 신청주체는 규정에 따라 은행에 관련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의 지급 사용(외화자본금의 직접적 지급 사용 포함)시 <직접투자 관련 계좌 자금 지급 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은행은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대외지급 업무 및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 지급 업무 처리 시 '고객을 알고', '업무를 장악하며', '심사책임을 다하는' 업무원칙에 준하여 진실성 심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 건의 자금 지급 업무 처리 시 그 직전 자금 지급건 증명자료의 진실성과 준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증명자료를 5년간 보관·비치해야 한다.  은행은 <<금융기구 외환업무 데이터 수집 규범(1.0버전)> 반포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회발[2014]18호)의 요구에 따라 자본금계좌, 환전지급대기계좌(계좌 성격 코드 2113)와 관련된 계좌, 국경간 수지, 경내 이체, 계좌 내 외화 환전·매출 등 정보를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그 중 환전지급대기계좌와 기타 위안화 계좌 간의 자금 이체의 경우 경내 수불금 증빙 작성을 통해 경내 이체 정보를 보고해야 하고 '영수증 번호'란에 자금 용도 코드를 기입(회발[2014]18호 문건의 '7.10 환전 용도 코드'에 따라 기입)해야 하며; 화물무역 심사 항목하의 지급을 제외하고 기타 이체거래의 코드는 일절 '929070'으로 기입한다.  (3) 기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진실성 증명자료를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심사의무를 다하고 거래 배경의 진실성을 확인한 전제하에 기업을 위해 관련 지급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당일 외환관리국의 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관리국에 특수사항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지급 완료 후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업으로부터 관련 증명자료를 보충 제출받아 심사한 후 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해 특수사항 신고업무의 진실성 증명자료 보완상황을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준비금 명목으로 자본금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은 상기 진실성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일 기업의 월간 준비금(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누계 지급액이 미화 10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회에 외화자본금 전액 지급환전을 신청하거나 환전지급대기계좌 내의 위안화 자금 전액 지급을 신청하는 외상투자기업이 관련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해당 기업을 위해 환전, 지급 수속을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6. 기타 직접투자 항목하의 외화계좌자금 환전 및 사용 관리**  경내 기구가 개설한 경내 자산 현금화계좌 및 경내 재투자계좌 내 자금의 환전은 외상투자기업 자본금계좌 관리방식을 참조한다.  경내 개인이 개설한 경내 자산 현금화계좌와 경내 재투자계좌, 경내 기구와 개인이 개설한 경외 자산 현금화계좌는 관련 업무 등기 증빙서류를 근거로 은행에서 직접 환전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 초기비용계좌의 자금 환전은 지급환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경외입금 보증금 전문계좌와 경내입금 보증금 전문계좌 내의 외화자금은 환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담보 이행이나 위약금 공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증금은 보증금 수취 당사자가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기타 자본항목 외화계좌로 이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상기 직접투자 항목 계좌 내의 이자수익과 투자수익은 모두 해당 계좌 내에 유치가 가능하며 이자·수익 명세서를 근거로 경상항목 결산계좌에 예치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환전 및 지급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7. 외환관리국의 사후 감독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1)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화관리조례>,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화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환전 및 사용 등 은행 업무의 준법성에 대한 지도와 확인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확인조사의 방식에는 관련 업무주체의 서면설명서 및 업무자료 제출 요구, 책임자 면담, 현장 사열 또는 업무주체의 관련 자료 복사, 위법행위 통보 등이 포함된다. 은행이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의 자본항목 외화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고, 외상투자기업 등이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의 자유환전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서면설명서를 제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해당 기업을 위해 기타 자본항목 외화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2) 외상투자기업과 은행이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환전 및 사용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통지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화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한다.  **8. 기타 사항**  이 통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 전의 규정이 이 통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지급환전 관리 관련 업무처리 강화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회종발[2008]142호),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지급환전 관리 관련 업무처리 강화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보충통지>(회종발[2011]88호) 및 <일부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환전 관리방식 개혁 시범사업 추진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회발[2014]3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통보받은 후 적시에 해당 관할구역 내의 중심지국, 지국 및 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한 경우 적시에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 관리사에 반영하기 바란다.  첨부: 직접투자 관련 계좌 자금 지급 지시서(약)    국가외환관리국  2015년 3월 30일 |  | **国家外汇管理局**  **关于改革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的通知**  汇发[2015]19号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  为进一步深化外汇管理体制改革，更好地满足和便利外商投资企业经营与资金运作需要，国家外汇管理局决定在总结前期部分地区试点经验的基础上，在全国范围内实施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改革。为保证此项改革的顺利实施，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实行意愿结汇**  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意愿结汇是指外商投资企业资本金账户中经外汇局办理货币出资权益确认（或经银行办理货币出资入账登记）的外汇资本金可根据企业的实际经营需要在银行办理结汇。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意愿结汇比例暂定为100%。国家外汇管理局可根据国际收支形势适时对上述比例进行调整。  在实行外汇资本金意愿结汇的同时，外商投资企业仍可选择按照支付结汇制使用其外汇资本金。银行按照支付结汇原则为企业办理每一笔结汇业务时，均应审核企业上一笔结汇（包括意愿结汇和支付结汇）资金使用的真实性与合规性。  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境内原币划转以及跨境对外支付按现行外汇管理规定办理。  **二、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意愿结汇所得人民币资金纳入结汇待支付账户管理**  外商投资企业原则上应在银行开立一一对应的资本项目-结汇待支付账户（以下简称结汇待支付账户），用于存放意愿结汇所得人民币资金，并通过该账户办理各类支付手续。外商投资企业在同一银行网点开立的同名资本金账户、境内资产变现账户和境内再投资账户可共用一个结汇待支付账户。外商投资企业按支付结汇原则结汇所得人民币资金不得通过结汇待支付账户进行支付。  外商投资企业资本金账户的收入范围包括：外国投资者境外汇入外汇资本金或认缴出资（含非居民存款账户、离岸账户、境外个人境内外汇账户出资），境外汇入保证金专用账户划入的外汇资本金或认缴出资；本账户合规划出后划回的资金，同名资本金账户划入资金，因交易撤销退回的资金，利息收入及经外汇局（银行）登记或外汇局核准的其他收入。  资本金账户的支出范围包括：经营范围内结汇，结汇划入结汇待支付账户，境内原币划转至境内划入保证金专用账户、同名资本金账户、委托贷款账户、资金集中管理专户、境外放款专用账户、境内再投资专用账户的资金，因外国投资者减资、撤资汇出，经常项目对外支付及经外汇局（银行）登记或外汇局核准的其他资本项目支出。  结汇待支付账户的收入范围包括：由同名或开展境内股权投资企业的资本金账户、境内资产变现账户、境内再投资账户结汇划入的资金，由同名或开展境内股权投资企业的结汇待支付账户划入的资金，由本账户合规划出后划回的资金，因交易撤销退回的资金，人民币利息收入及经外汇局（银行）登记或外汇局核准的其他收入。  结汇待支付账户的支出范围包括：经营范围内的支出，支付境内股权投资资金和人民币保证金，划往资金集中管理专户、同名结汇待支付账户，偿还已使用完毕的人民币贷款，购付汇或直接对外偿还外债，外国投资者减资、撤资资金购付汇或直接对外支付，购付汇或直接对外支付经常项目支出及经外汇局（银行）登记或外汇局核准的其他资本项目支出。  结汇待支付账户内的人民币资金不得购汇划回资本金账户。由结汇待支付账户划出用于担保或支付其他保证金的人民币资金，除发生担保履约或违约扣款的，均需原路划回结汇待支付账户。  **三、外商投资企业资本金的使用应在企业经营范围内遵循真实、自用原则**  外商投资企业资本金及其结汇所得人民币资金不得用于以下用途：  （一）不得直接或间接用于企业经营范围之外或国家法律法规禁止的支出；  （二）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不得直接或间接用于证券投资；  （三）不得直接或间接用于发放人民币委托贷款（经营范围许可的除外）、偿还企业间借贷（含第三方垫款）以及偿还已转贷予第三方的银行人民币贷款；  （四）除外商投资房地产企业外，不得用于支付购买非自用房地产的相关费用。  **四、便利外商投资企业以结汇资金开展境内股权投资**  除原币划转股权投资款外，允许以投资为主要业务的外商投资企业（包括外商投资性公司、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和外商投资股权投资企业），在其境内所投资项目真实、合规的前提下，按实际投资规模将外汇资本金直接结汇或将结汇待支付账户中的人民币资金划入被投资企业账户。  上述企业以外的一般性外商投资企业以资本金原币划转开展境内股权投资的，按现行境内再投资规定办理。以结汇资金开展境内股权投资的，应由被投资企业先到注册地外汇局（银行）办理境内再投资登记并开立相应结汇待支付账户，再由开展投资的企业按实际投资规模将结汇所得人民币资金划往被投资企业开立的结汇待支付账户。被投资企业继续开展境内股权投资的，按上述原则办理。  五、进一步规范结汇资金的支付管理  （一）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及其他相关申请主体应按规定如实向银行提供相关真实性证明材料，并在办理资本金结汇所得人民币资金的支付使用（包括外汇资本金直接支付使用）时填写《直接投资相关账户资金支付命令函》（见附件）。  （二）银行应履行“了解客户”、“了解业务”、“尽职审查”等展业原则，在为外商投资企业办理资本金对外支付及结汇所得人民币资金支付时承担真实性审核责任。在办理每一笔资金支付时，均应审核前一笔支付证明材料的真实性与合规性。银行应留存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及使用的相关证明材料5年备查。  银行应按照《国家外汇管理局关于发布<金融机构外汇业务数据采集规范（1.0版）>的通知》（汇发[2014]18号）的要求，及时报送与资本金账户、结汇待支付账户（账户性质代码2113）有关的账户、跨境收支、境内划转、账户内结售汇等信息。其中，结汇待支付账户与其他人民币账户之间的资金划转，应通过填写境内收付款凭证报送境内划转信息，并在“发票号”栏中填写资金用途代码（按照汇发[2014]18号文件中“7.10结汇用途代码”填写）；除货物贸易核查项下的支付，其他划转的交易编码均填写为“929070”。  （三）对于企业确有特殊原因暂时无法提供真实性证明材料的，银行可在履行尽职审查义务、确定交易具备真实交易背景的前提下为企业办理相关支付，并应于办理业务当日通过外汇局相关业务系统向外汇局提交特殊事项备案。银行应在支付完毕后20个工作日内收齐并审核企业补交的相关证明材料，并通过相关业务系统向外汇局报告特殊事项备案业务的真实性证明材料补交情况。  对于外商投资企业以备用金名义使用资本金的，银行可不要求其提供上述真实性证明材料。单一企业每月备用金（含意愿结汇和支付结汇）支付累计金额不得超过等值10万美元。  对于申请一次性将全部外汇资本金支付结汇或将结汇待支付账户中全部人民币资金进行支付的外商投资企业，如不能提供相关真实性证明材料，银行不得为其办理结汇、支付。  **六、其他直接投资项下外汇账户资金结汇及使用管理**  境内机构开立的境内资产变现账户和境内再投资账户内资金结汇参照外商投资企业资本金账户管理。  境内个人开立的境内资产变现账户和境内再投资账户，以及境内机构和个人开立的境外资产变现账户可凭相关业务登记凭证直接在银行办理结汇。  外国投资者前期费用账户资金结汇按支付结汇原则办理。  境外汇入保证金专用账户和境内划入保证金专用账户内的外汇资金不得结汇使用。如发生担保履约或违约扣款的，相关保证金应划入接收保证金一方经外汇局（银行）登记后或外汇局核准开立的其他资本项目外汇账户并按照相关规定使用。  上述直接投资项下账户内利息收入和投资收益均可在本账户内保留，然后可凭利息、收益清单划入经常项目结算账户保留或直接在银行办理结汇及支付。  七、进一步强化外汇局事后监管与违规查处  （一）外汇局应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等有关规定加强对银行办理外商投资企业资本金结汇和使用等业务合规性的指导和核查。核查的方式包括要求相关业务主体提供书面说明和业务材料、约谈负责人、现场查阅或复制业务主体相关资料、通报违规情况等。对于严重、恶意违规的银行可按相关程序暂停其资本项目下外汇业务办理，对于严重、恶意违规的外商投资企业等可取消其意愿结汇资格，且在其提交书面说明函并进行相应整改前，不得为其办理其他资本项下外汇业务。  （二）对于违反本通知办理外商投资企业资本金结汇和使用等业务的外商投资企业和银行，外汇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有关规定予以查处。  **八、其他事项**  本通知自2015年6月1日起实施。此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完善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支付结汇管理有关业务操作问题的通知》（汇综发[2008]142号）、《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完善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支付结汇管理有关业务操作问题的补充通知》（汇综发[2011]88号）和《国家外汇管理局关于在部分地区开展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改革试点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4]36号）同时废止。  国家外汇管理局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和银行。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资本项目管理司反映。    附件：直接投资相关账户资金支付命令函（略）    国家外汇管理局  2015年3月30日 |